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000 (국방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임신·출산 친화적인 근무여건 조성 등을 위해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군인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지휘관이 승인하도록 하고,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군인에게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확대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보장을 위해 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이 되더라도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 산입을 제외토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 예고(2025.4.10.~2025.5.2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2호 중 “제1호의2”를 “제1호의2, 제5호”로 한다.

제12조제6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휘관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군인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제12조제14항을 제1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5항(중전의 제14항) 중 “제13항”을 “제14항”으로 한다.

⑭ 남성 군인은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배우자 출산으로 인한 청원휴가를 사용하는 군인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휴가의 종류 등) ①·② (생략)	제9조(휴가의 종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하사 이상 군인의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③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른 휴가를 제외한 청원휴가 중 동일한 사유의 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2. ----- -- 제1호의2, 제5호----- ----- ----- -----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제12조(청원휴가) ① ~ ⑤ (생략)	제12조(청원휴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⑥ ----- ----- ----- -----. 이 경우, 지휘관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군인이

⑦ ~ ⑬ (생략) <u><신설></u> ⑭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휴가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 한다.	<u>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u> ⑦ ~ ⑬ (현행과 같음) ⑭ <u>남성 군인은 배우자의 임신 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동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u> ⑮ ----- 제14항-----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양성평등정책팀	
연 락 처	(02) 748 - 6149